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한국투자증권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05.1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 100백만원 부과
임원	퇴직자 위법·부당행위(주의 상당) 2명 조치생략 1명
직원 등	자율처리필요사항 2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

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, (舊)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7조 제3호, 제29조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10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①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, ②변경필요시 해당프로그램을 복사 후 수정하여야 하며, ③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 및 관련 책임자 승인 후 실시하고,

④프로그램 반출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, ⑤운영체제,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 등의 시스템 프로그램도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고, ⑥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산프로그램을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에 자체 보안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

① 회사 A부와 B부는 2019.7.5.~2021.5.26. 기간중 ㉠과 ㉡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변경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제3자 검증을 미수행(㉠ 1회, ㉡ 11회) 하였음

② B부는 2020.4.2.~2021.5.26. 기간중 ㉡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개발 또는 테스트 시스템으로 복사하지 않고 운영시스템에서 직접 수정(11회) 하였음

③ A부는 2019.7.5. ㉡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야간선물시장 운영시작 시간이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테스트를 미실시(1회) 하였고

C부와 D부는 2019.5.20.~6.4 기간중 ㉡ 프로그램에 예상 환전금액과 실제 환전금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미실시(1회) 하였으며

B부는 2020.4.2.~2021.5.26. 기간중 ㉡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책임자 승인 없이 운영 시스템에 적용(11회) 하였음

④ B부는 2020.4.2.~ 2021.5.26. 기간중 ㉡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아닌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직접 프로그램을 반출(11회) 하였음

⑤ E부는 2018.7.2. 시스템 프로그램인 ㉢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DB시스템 계정 비밀번호 변경작업을 관리자에게 미보고 (1회) 하였음

⑥ F부는 2021.1.1.~2022.10.26. 기간중 ㉣ 프로그램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설치하기 전 자체 보안성 검증을 미수행(217회) 하였음

이로 인해, ㉠ 매매업무와 ㉡ 주문업무가 중단(약 1시간 32분)되는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고, 환전업무 오류로 인하여 회사손실(약 35백만원)이 발생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1조 제2항
2. (舊)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(2025.2.5. 개정 前의 것) 제7조, 제29조